

산업재해 예방

2023년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계획(안)

2023. 3.



강릉원주대학교
시 설 과



목 차



I. 개요	1
II. 2022년 추진실적	1
III. 우리 대학 현업근로자 현황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IV. 2023년 추진계획	5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정착	6
2.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7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8
4. 작업환경·근로자 건강관리 점검 및 개선	10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통계기록 유지·관리	11
6. 위험성 평가 및 보호구 착용 강화	12
V. 향후 추진일정	13

I.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보건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1.)에 따라 교육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 법령상의 각종 의무를 적용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안전·보건 점검)

□ 기본 방향

- 「산업안전보건법」,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관련 정책 사항의 적극 이행
-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사고요인 차단
- 안전문화 확산 활동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촉진

II. 2022년 추진실적

□ 2022년 추진실적

-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계약 : 2022. 3.
 - (안전관리) (주)세이프지, (보건관리)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2022. 3.
 - 관리감독자가 현업근로자 교육 및 집체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차례 개최(2022. 3. / 6. / 9. / 12.)
- 부설유치원 급식실 노후 설비 개선 계획 제출: 2022. 4.
 - 2022. 2. 개선 완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2022. 5.~6.
 - 2022. 5. 23.~6. 22.(30일) 대한안전교육협회 통신교육 16시간 17명 이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2022. 5.
 - 2022. 5. 12.~13.(2일) 교육부 현장 점검(특이사항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2. 6.
 - 「2022년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계획」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 부서를 총무과에서 시설과로 변경
 - 유통기한 경과 미사용 유기 화학 물질 폐기: 2022. 8.
 - 원주캠퍼스 유기화학물(페인트, 기계장치 각종 오일 등) 폐기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추가 실시: 2022. 8.
 - 개인별 대한안전교육협회 통신교육 16시간 4명 이수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용도 변경 및 표찰 부착: 2022. 9.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총무과): 2022. 9.
 - 2022년 강릉원주대학교 전체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2022. 10.
 - 실시 업체: 주식회사 세이프지
 - 실시 기간: 2022년 10월 5일~11월 24일
 - 2022년 강릉원주대학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2022. 10.
 - 실시 업체: 주식회사 세이프지
 - 실시 기간: 2022년 10월 28일~12월 11일
 - 위험성평가 실시 후 시설분야 우선 조치: 2022. 12.
 - 전기실 분전반 교체 및 직각사다리 커버 제작 등
 - 안전보호구 구입: 수시
 - 안전모, 안전화, 미끄럼 방지화 등 수요 조사 후 구입 배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선임): 수시
 - 위탁 업체 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직 변경
 -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 보고서 제출
- ⇒ ‘21년 대비 산업재해 1건 감소(총2건)

□ 안전·보건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원)

구분	예산 과목	건명	예산	집행
국고	계		59,100,000	59,100,000
	일반 용역비	2022년 산업안전관리(강릉) 위탁 용역 계약	32,616,000	5,000,000
		2022년 산업안전관리(원주) 위탁 용역 계약		1,500,000
		2022년 산업보건관리(강릉) 위탁 용역 계약		6,500,000
		2022년 산업보건관리(원주) 위탁 용역 계약		2,500,000
		2022년 위험성 평가 실시 용역 계약		13,816,000
		2022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용역 계약		3,300,000
	일반 수용비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교육	14,484,000	1,003,000
		원주캠퍼스 유통기한 경과 미사용 유기 화학 물질 폐기		880,000
		강릉원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교육		236,000
		직원휴게실 표찰 보수 신규 교체		759,000
		안전보호구 구입(안전모 등)		3,478,000
		안전보호구 구입(미끄럼방지화)		1,508,800
		안전보호구 구입(안전화)		5,742,000
		안전 개선용 소화기 구입		877,200
	시설 장비 유지비	위험성평가 실시 후 감소대책 마련 개선(분전반)	12,000,000	7,000,000
		위험성평가 실시 후 감소대책 마련 개선(사다리커버 등)		5,000,000
대학 회계	계		13,000,000	7,877,200
	관리 용역비	2022년 산업안전관리(강릉) 위탁 용역 계약	13,000,000	2,656,000
		2022년 산업안전관리(원주) 위탁 용역 계약		1,074,000
		2022년 산업보건관리(강릉) 위탁 용역 계약		2,687,200
		2022년 산업보건관리(원주) 위탁 용역 계약		1,460,000

III. 우리 대학 현업근로자 현황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리 대학 현업근로자 산정기준

- 시설관리직, 전산직, 조리직, 조경직, 환경미화직, 경비직, 통학직, 방사선직(학기중 채용인력 포함)

※(미포함) 무인경비시스템 상주직, 생활협동조합, 생활관(BT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고시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현업근로자 현황

(단위, 기준 : 명, ' 23. 3. 2. 현재)

구분	조리	환경 미화	시설	전산	경비	조경	통학	기타*	계
강릉 캠퍼스	26	35	22	3	3	4	4	1	98
원주 캠퍼스	2	17	9	1	-	-	2	-	31
계	28	52	33	4	3	4	6	1	129

* 기타 : 공무원(치과대학 방사선실)

○ 2022년도 재해·사고 현황

일자	직종	상해 종류	상해 장소	재해·사고 원인	재발방지 계획	행정상 조치
2022. 9. 14.	환경 미화	골절	생명 1호관	미끄러짐	논슬립 장치 처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후 강릉 지방 고용 노동청 제출
2022. 10. 5.	조리	골절	학생 생활관	고중량 용기 눌림	2인 1조 작업 지시	

IV. 2023년 추진 계획

비
전

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로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목
표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전
략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추진과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정착

2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4

작업환경·근로자 건강관리 점검 및 개선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통계기록 유지·관리

6

위험성 평가 및 보호구 착용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정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설정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현장 정착 및 홍보 강화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전 직원 및 모든 도급 근로자의 인식확대를 위해 X-배너 제작·배포, 홈페이지 상시 게시 등 홍보 추진

< 안전·보건 경영방침 >

강릉원주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1. 모든 구성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안전·보건 목표로 삼는다.
2.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과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3. 강릉원주대학교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4. 모든 구성원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 도급·용역·위탁 등의 협력관계자가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 방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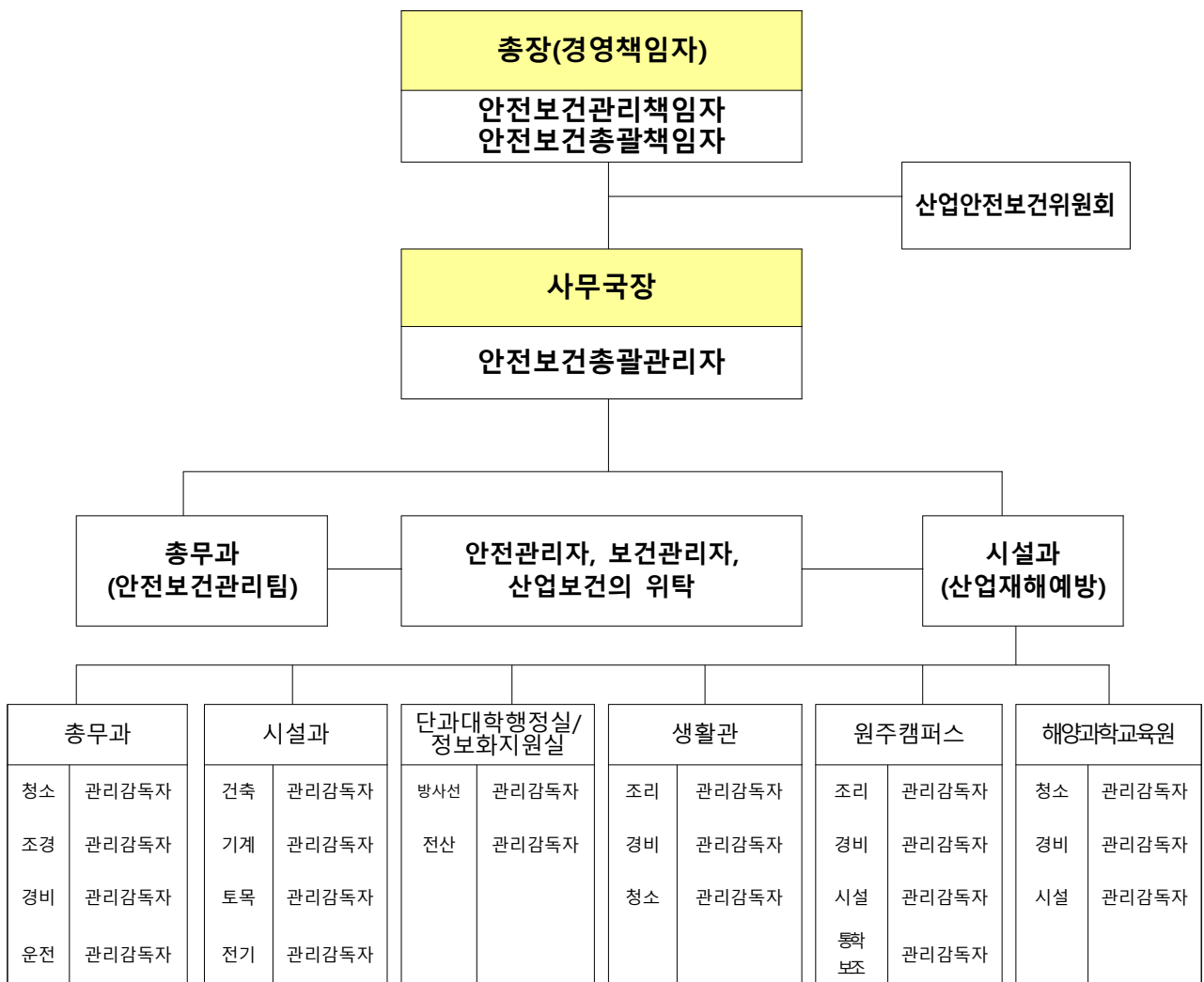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2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2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를 둠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사무국장을 안전보건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하도록하며, 현업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과·실장이 사무국장을 보좌(관리감독자 지휘 등)하도록 함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총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사무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대한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현업업무 담당팀장, 담당자)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의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의 업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에 위탁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 (정기 교육)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관리자 포함) 스스로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전체 근로자	분기 6시간 (매월 2시간)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대면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3월, 9월 계획)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대면(8시간) 및 온라인(8시간) 교육

- (그 밖의 특별교육)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채용시 (직무배치 전)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일용 외 근로자	8시간	온라인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 근로자	2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특별안전교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근로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 이상)	자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 건관리자/관리감독자) 또는 대행기관 위탁시 업무수행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 (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정기교육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시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는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모든 신규입사자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작업 내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			

4] 작업환경 · 근로자 건강관리 점검 및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138조 】

▶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작성비치, 근로자의 건강 상태파악 및 건강관리

○ (작업환경 점검) 산업안전관리 전문기관 재위탁(3월)을 통해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효과)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작업병 발생 예방

- (절차)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 기한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및 측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보건관리 전문기관 재위탁(3월)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효과)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사무직) 2년에 1회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통계기록 유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 ▶ 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등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보고체계 관리

○ (재발방지 대책) 부서별 산재발생 현황 분석으로 산업재해 방지 대책 수립 및 반복재해 근절을 통한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

- (절차)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내</u>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u>3개월 이상의 요양이</u>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통계기록 유지·관리) 교육부에서 제공한 산업재해 통계 보고양식에 따라, 현업부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산업재해 통계 조사표)

직종 구분	현업 근로자 수	이상 온도 접촉	넘어짐	절단, 베임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소계
조리									
시설									
경비									
청소									
조경									
그 외									
합계									

⑥ 위험성 평가 및 보호구 착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125조】

-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방사선,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 연1회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전체 작업장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 ▶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8월 말)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는 별도 시행

※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

○ (보호구 착용)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안전 및 보호 장비 등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
- (효과)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앞치마, 귀마개 등

- (절차)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VI. 향후 일정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2023. 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후 전부서 계획 공유
-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계약 : 2023. 3.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결과 보고 매월 2회
 -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결과 보고 매월 1회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2023. 3. / 9.
 -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2023. 3.
 - 관리감독자가 현업근로자 교육 및 집체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분기별
- 위험성평가 실시 : 2023. 9.
- 위험성평가 실시 후 감소대책 마련 개선: 위험성 평가 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선임): 수시
 - 위탁 업체 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직 변경
 -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 보고서 제출
- 안전보호구 구입: 수시